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394 압류처분무효 확인의 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광역시장
변 론 종 결	2015. 7. 16. (원고 2.에 대하여)
	2015. 8. 13. (원고 1.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5. 10. 8.

주 문

1. 원고 B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가스오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3. 10. 21. 대표이사인 C이 석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는 2013. 12. 6. 대표이사 D가 주식회사 [redacted]증권에서 사채,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 및 상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2) 그리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은 C이 2013. 12. 16. 대표이사를 F으로 하여 석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은 C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석유수출입업 신고 및 저장시설 계약

1) 원고 A는 2013. 11. 29.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관원'이라고 한다)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저장시설을 '[redacted]도 [redacted]에 있는 [redacted]에너지 소유의 15,000킬로리터'로 기재하였다.

2) E는 2013. 12. 20. 석관원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저장시설을 [redacted] [redacted]군 [redacted]리 [redacted]에 있는 5,500킬로리터'로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등록신청을 위해 2013. 12. 19. [redacted]터미널 주식회사(이하 '[redacted]'이라고 한다)와 [redacted] [redacted]군 [redacted]리 [redacted]에 있는 [redacted]소유의 옥외저장탱크 T-204(이하 'T-204'라고 한다)를 2013. 12. 19.부터 2014. 12. 18.까지 보증금 5,000만 원, 보관료 월 2,5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액체화물 취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3) 한편, 원고들은 2013. 12. 13. 태영과, 계약기간을 2014. 12. 14.까지, 보증금 7,000만 원, 보관료 월 2,150만 원, 출고지시권한은 원고 B이 갖는 것으로 하여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 또는 [redacted]리 [redacted]에 있는 [redacted] 소유의 옥외 저장탱크 T-105(용량 11,000킬로리터, 69,182배럴)와 그 부속시설물에 액체화물취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와 E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원고 A와 E는 2013. 12. 중순경 E가 경유 10피피엠 설퍼(GASOIL 10PPM SULPHUR,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고, 원고 A가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기본 구조는 계약기간 6개월 동안 E가 물품을 수입하여 원고 A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원고 A가 주문서로 물품을 주문하면 E는 원고 A가 지정한 유류저장탱크시설까지 직접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다. 기본 계약에 의하면 물품대금은 석관원의 품질검사 합격공문을 수령한 당일 또는 익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또한 원고 A와 E는 위 기본계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제품의 인도는 별도로 정하고, 잔금은 석관원 합격증이 나온 당일 또는 익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판매지역이 나뉘어 있는 경우 최초 석관원 합격증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제품의 인도지 및 인도방법 등 제품인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라. 동산근담보설정계약

원고 A는 2013. 12. 16. [redacted]증권 주식회사, 원고 B과 사이에 채무자를 원고 A, [redacted]증권 주식회사를 동산담보권자 A, 원고 B을 동산담보권자 B, 채권최고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37,700,000,000원으로 하여 [redacted]에너지 주식회사의 [redacted]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로 [redacted] 옥외저장탱크 TK-108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 전부와 [redacted]의 T-105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 전부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동산근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1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근담보설정등기도 마쳤다.

마. 이 사건 물품의 수입 경위

1) E는 2013. 12. 24.부터 2014. 3. 4.까지 3항차에 걸쳐 일본 G이 제조한 이 사건 물품 68,264,674리터를 상사 중개인인 유한회사 [redacted]오일(이하 '[redacted]스'라고 한다)을 통해 울산항(25,548,200리터)과 평택항(42,716,474리터)으로 수입하였다.

2) E는 2014. 3. 2. 이 사건 물품 8,181.696톤을 수입하여 TK-105에 입고하였는데, 위 탱크에 입고된 물품에 바이오디젤과 유동성 강하제가 주입되어 총 분량이 10,049,770리터가 되었고, 같은 날 평택항에 입고된 물품은 14,871,047리터였다. 그리고 E는 2014. 3. 2. 위 탱크에 입고된 물품에 대하여 2014. 3. 6. 수입신고를 마쳤다.

3) 위 일자에 수입된 물품 8,181.696톤 중 약 4,447.635톤이 2013. 3. 5.경 TK-105에서 T-204탱크로 옮겨졌고, E가 석관원에 위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신청하여, 석관원은 2014. 3. 12. 위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합격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 A는 E로부터 위 물품을 인도받아 소비하였다.

4) 위 수입된 물품 8,181.696톤 중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TK-105 탱크에 남아있던 물품 3,734.061톤(4,489,600리터, 이하 '이 사건 가스오일'이라고 한다) 역시 품질검사를 받기 위해 2014. 3. 13. T-204탱크로 옮겼다. 석관원은 2014. 3. 17. 이 사건 가스오일의 시료를 채취하여 2014. 3. 28.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2014. 3. 31. 우편으로 E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품질적합의 결과통보를 하였으나, E 사무실의 폐문으로 반송처리 되었다.

5) 원고 A와 E는 2014. 3. 14. TK-105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오일 10,049,770리터의 가격을 리터당 1,460원으로 정하여 지불 총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14,672,664,200원으로 하는 물품구매주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는 위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2014. 2. 17.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3,348,879,398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 경위

1) E는 3항차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지방세 중 자동차세(주행분, 이하 '주행세'라고 한다)를 단 한 차례도 신고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2014. 2. 28.까지 1,969,554,290(가산세 및 가산금 미포함 금액)원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redacted]시장이 납부고지한 주행세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14. 3. 17. E가 임차한 저장탱크인 T-204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가스오일을 압류(이하 '선행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redacted]시장도 2014. 3. 18. E가 납부하지 않은 주행세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선행 압류에 참가압류하였다.

3) 이후 대우증권이 2014. 3. 27. 피고에게 수입경유에 대한 원가계산식 및 송금내역을 제출한 하면서 선행 압류에 대한 해제조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 A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3항차분 미지급금 3,035,513,422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여 2014. 4. 28. 원고 A가 E에게 지급해야 할 3항차분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에 압류하였으며, 이후 2014. 4. 29. 위 선행 압류는 해제하였다.

4) 그런데 피고가 2014. 5. 7. 원고 A에게 위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였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에도 원고 A가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A가 피고의 요청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2014. 5. 12. 다시금 이 사건 가스오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C과 F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C과 F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되어 2015. 4. 10.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6, 323(병합)호로 'C이 F을 E의 대표이사로 하여 바지회사인 E를 설립한 후 E의 이름으로 경유의 수입 및 통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그 수입된 경유가 보세구역에 반출되면 그 즉시 E가 원고 A에게 이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이전하되 E에게는 추후 주행세를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E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양도단가를 책정하여 원고 A가 E로부터 경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주행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C은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의 형을, F은 징역 2년 6월(다만 4년간 집행유예)에 벌금 67억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 제2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edacted]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E가 수입한 이 사건 가스오일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 A가 E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자는 원고 A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오일이 E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나.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이 사건 가스오일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원고 A와 사이에 동산담보권계약을 체결한 담보권자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B이 담보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사건 가스오일의 실질화주는 원고 A이므로, 이 사건 가스오일을 수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자는 원고 A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다.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자는 E이므로, 원고 A의 담보권자에 불과한 원고 B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이 사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존재하더라도 담보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바,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가스오일에 선하증권이 발행된 이상 이 사건 가스오일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동산담보는 무효이므로 원고 B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갖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가스오일의 수입 주체는 E이고 따라서 주행세 납부의무자 역시 E이며,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 A에게 이전된 바 없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자는 E이다. 따라서 주행세를 체납한 E 소유의 이 사건 가스오일을 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 B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 B은 2013. 12. 16.자 동산근담보설정계약에 기한 근담보권자로서 담보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사건 압류처분이 존재하더라도 담보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B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4. 피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스오일을 수입한 주체 및 지방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35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19조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게 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오일을 수입한 화주(주체) 즉 수입된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행세 납부의무자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스오일의 화주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오닉스와 E 사이에 일본 G이 제조한 이 사건 물품 68,264,674리터(여기에 이 사건 가스오일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포함되어 있다)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스오일을 수입한 주체는 E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주행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 역시 E가 된다.

① [redacted]스와 E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당사자는 E가 아니라 원고 A라는 점에 대하여 [redacted]스가 통모를 한 사실이 있다거나 [redacted]스가 위 수입계약의 실제 계약 당사자는 E가 아닌 원고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C이 F을 대표이사로 세워 E를 설립한 후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A와 E는 각 별개의 법인격이고, 법률행위의 효과 역시 개별 법인격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들 역시 C과 F이 형사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가스오일의 수입 주체가 E이고, 주행세를 체납한 주체 역시 E임을 인정하였다.

④ 원고 A와 E가 조세 포탈을 위해 통모한 내용은 주행세 납부의무를 E에게 부과시키고 이 사건 가스오일은 최종적으로 원고 A가 소유하고자 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가스오일의 수입 주체 자체를 원고 A로 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다.

⑤ 원고 A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물품거래계약 역시 조세 포탈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계약 체결 자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E는 [redacted]스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가스오일을 원고 A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 A가 E로부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이 사건 가스오일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원고 A는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C과 F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는 이 사건 가스오일의 실질화주를 원고 A라고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E와 원고 A 사이에서 이 사건 가스오일을 최종적으로 원고 A가 소유하는 것을 의욕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가스오일의 수입 주체가 곧바로 원고 A가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원고 A와 E 사이에 이 사건 가스오일을 포함한 이 사건 물품 전체에 대한 거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위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원고 A가 E에게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E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인도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스오일이 원고 A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E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가스오일은 T-204에 저장되어 있고, 위 저장탱크는 E가 이 사건 가스오일을 비롯한 가스오일 수입을 위하여 태영으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스오일은 여전히 E의 점유하에 있다.

② 이 사건 가스오일을 수입하면서 T-204가 아닌 원고가 임차한 T-105에 저장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T-204에 바이오 디젤 및 유동성 강하제 등이 있어 이 사건 가스오일과의 혼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지 E가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점유를 원고 A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로 보인다(을 제9호증의 1, 2 참조).

③ 원고 A와 E 사이에 2014. 3. 14. T-105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 전량에 대한 물품구매주문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 사건 가스오일은 T-204로 옮겨졌고, T-105에 저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된 것도 아니다.

④ 이 사건 가스오일이 T-105에 저장됨으로써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자가 원고 A로 변경된 것이라면 원고 A는 T-105에 입고된 이후인 2014. 3. 6. 위 물건에 대한 화주를 원고 A로 수입신고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당일 E가 위 물건의 화주임을 밝히고 수입신고를 하였고, T-105를 이 사건 가스오일의 저장시설로 변경등록 하여 원고 A가 직접 석유품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E가 석유품질검사를 신청하였는바, 이는 원고 A와 E 사이에 T-105에 이 사건 가스오일이 저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⑤ C과 F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가스오일이 통관되면 원고 A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가스오일은 아직 보세창고에 남아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오일의 소유자는 E라고 할 것이므로, 주행세를 체납하고 있는 E 소유의 이 사건 가스오일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우정민

판사 이수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목록

1. 압류재산 : GAS-OIL
2. 압류수량 : 4,489,670L
3. 소재지 : [redacted]광역시[redacted]군[redacted]읍[redacted]길 [redacted]
   ([redacted]터미널내저장장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관계 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과세시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